

법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내규

법학전공 교육과정 운영 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 (전공설치목적)** 법학전공은 법학전공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의 양성 및 전문직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원칙)** ① 법학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전과, 편입 등도 포함)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③ 법과대학에 입학(전과, 편입 등도 포함)한 사람은 법학전공 또는 국제법무학전공을 다전공 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영역으로 선택할 수 없다.

③ 모든 교과목은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제 2 장 교양과정

**제3조 (교양과목 이수)** ① 교양과목은 본 대학교 교양과정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 (전공교양 이수)** ① 전공교양과목은“법학개론”(3학점),“법철학”(3학점)“논리와 사고”와“한국사입문”중 1과목(3학점) 택일 총9학점으로 한다.

제 3 장 전공과정

**제5조 (전공과목 이수)** ① 법학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은‘별표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① 법학전공의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법학전공필수과목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정한다.

## 2 법과대학 교육과정 운영내규

---

### <표1> 전공필수과목 : 16개 과목

헌법 I, 헌법 II,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형법총론, 형법각론, 상법 I, 상법 II, 행정법 I, 행정법 II, 민사소송법 I, 형사소송법, 국제법 I, 노동법 I

- ③ 법학전공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전공선택과목은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으로 한다.
- ⑤ 전공선택과목은 다음의 <표2>과 같이 정한다.

### <표2> 전공선택과목 : 43개 과목

친족상속법, 상법 III, 상법 IV, 상법 V,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II, 경제법, 행정법 III, 행정법 IV, 노동법 I, 헌법재판론, 담보물권법, 형사정책, 법사회학, 조세법, 법제사, 부동산법무, 환경법, 지적소유권법, IT법무, 계약실무영어, 국제법 II, 국제경제법, 국제거래법, 국제통상법, 영미법무, 헌법특강, 민법특강, 형법특강, 헌법연습, 민법연습, 형법연습, 상법연습, 행정법연습, 민사소송법연습, 형사소송법연습, 노동법연습, 국제법연습, 로펌실무 I, 로펌실무 II, 로펌실무 III, 로펌실무 IV, 로펌실무 V

- ⑥ 본조에 있어서 상법 I 은 상법총론을, 상법 II 는 회사법을, 상법 III 는 유가증권법을, 상법 IV 는 보험법을, 상법 V 는 해상법을, 행정법 I 은 행정법총론을, 행정법 II 는 행정구제법을, 행정법 III 는 행정조직법을, 행정법 IV 는 행정법각론을, 노동법 I 은 노동법총론을, 노동법 II 는 노동법각론을, 로펌실무 I 은 민사변호사실무를, 로펌실무 II 는 형사변호사실무를, 로펌실무 III 은 조세·노동 및 행정사건변호사실무를, 로펌실무 IV 는 가사사건변호사실무를, 로펌실무 V 는 등기·경매 등 신청관련 변호사실무를 말하며, “연습”이라 함은 법률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이론을 연마하는 특별교과목을 의미하고, “특강”이라 함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자격고시 1차 객관식 시험 및 2차 주관식 시험의 준비를 위한 특별교과목을 말한다.

**제6조 (대학원 과목 이수)** ① 3학년 2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학생은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생의 이수가 허용된 대학원 교과목을 최대 6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 ② 대학원 교과목의 취득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대학원 진학 후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4장 졸업이수의 요건

**제7조 (졸업학점 이수체계)** ① 법학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최소 이수학점은 교양과목(35학점이상),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 (51학점 이상)을 합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130학점 이외에“법과대학 졸업능력 인증에 관한 내규”및“법과대학 졸업시험시행내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 (전공이수학점)** ① 단일전공과정 : 법학을 전공하는 자는 전공교양과목 9학점, 전공필수과목 36학점과 전공선택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과정 : 법학전공 학생으로서 타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거나, 타전공 학생으로서 법학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거 전공교양과목 9학점, 전공필수과목 36학점, 전공선택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6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과정 : 법학전공을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교양과목 9학점, 전공필수과목 27학점과 전공선택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다전공자의 특칙)** ① 타 학부(과) 학생으로서 법학 다전공 이수를 신청한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다전공을 인정한다.

② 법학을 다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경희대학교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전공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공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 법학전공과 국제법무학전공 사이의 부전공 및 다전공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⑥ 타 학부(과) 학생이 법학 다전공 이수를 신청한 경우 타 전공 개설과목 중 법과대학 개설 전공과목과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은 9학점 이내에서 졸업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법과대학 전공과목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인정받은 학점만큼 법과대학 개설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총 졸업학점에는 차이가 없다.

⑨ 본 내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전과생 및 편입생의 특칙)** ① 전과생 및 편입생(학사편입생 포함)은 전적학과(또는 전적전공) 및 전적대학(또는 졸업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와 법과대학이 인정하는 학점과 편입 또는 전과 이후 법과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하여 총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4 법과대학 교육과정 운영내규

---

- ② 일반편입생의 경우 전공교양과목 9학점, 전공필수과목 48학점과 전공선택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7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교 학점인정심사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학사편입자의 경우 다전공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 (특수과목의 이수인정)** ① 해외연수 학점, 취업스쿨 관련 학점, 사회봉사 학점, 교직원관련 학점,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전공 및 교양 학점으로 인정된다.

### 제5장 교과운영의 기본지침

**제12조 (삼단계의 반복학습)** ① 법과대학 4년간의 교과과정은 1,2년차의 기초단계, 3년차의 심화단계 및 4년차의 실전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 ② 법과대학장은 전공과목담당전임교원과 협의하여 각 전공에 있어서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년별 권장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학강좌의 수강생은 전항에 지정된 학년별 권장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여 국가시험을 준비함과 아울러 법률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분반운영)** ① 강좌는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수의 수강생을 단위로 분반하여 운영한다.

- ② 분반의 경우 과목담당 교수는 전공의 기본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전공과목의 개설)** ① 법과대학장은 전임교수의 의견을 들어서 법학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전공과목을 지정하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법률전문가의 자격시험의 과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법과대학장은 전공과목의 지정과 변경에 있어서 학년도별 최소 1회 이상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의 만족도, 국가시험과의 효율적 연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과과정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제15조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의 강좌개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계열교양과 전공필수과목의 강좌는 관련과목의 연계성, 수강생의 편의, 기타 제반사

정을 고려하여 1학기 및 2학기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② 전공선택과목은 학생들의 수요 및 과목의 중요성, 전공필수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1학기 또는 2학기를 지정하여 개설한다. 단,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선택과목은 격년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③ 학년 및 학기별 개설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 (학년별 권장과목 및 이수순서의 예시)** ① 전공과 학년별 이수과목의 순서는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이수학점의 제한, 복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학년의 권장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I, II 등의 순서로 표시된 과목은 그 순서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수학점의 제한, 복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수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 (법학부 폐지에 따른 교육과정 단계별 폐지)** ① 교육과정 단계별 폐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와 같이 1학년 과목은 2013학년부터 폐지, 2학년 과목은 2014학년도부터 폐지, 3학년 과목은 2016학년도부터 폐지, 4학년 과목은 2018학년도부터 폐지한다.

② 타 단과대학의 법학 과목을 이수할 경우 <별표 3>과 같이 국제법무학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별표 3>에서 지정하지 않은 과목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실시】** 본 내규의 적용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2008년 2월 29일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신교과과목】** [별표 2]의 구교과목은 신교과목과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한다.

**제4조 【실시】** 제17조 제1항 ~ 3항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6 법과대학 교육과정 운영내규

---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의 적용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제법무학전공 교육 과정 운영 내규

### 제 1 장 총 칙

**제1조 (전공설치목적)** 국제법무학전공은 법전공의 체계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국제법무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전문국제법률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원칙)** ① 국제법무학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전과, 편입 등도 포함)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③ 법과대학에 입학(전과, 편입 등도 포함)한 사람은 법학전공 또는 국제법무학전공을 다전공 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영역으로 선택할 수 없다.

③ 모든 교과목은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다.

### 제 2 장 교양과정

**제3조 (교양과목 이수)** ① 교양과목은 본 대학교 교양과정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 (전공교양 이수)** ① 전공교양과목은 <법학개론>(3학점), <법철학>(3학점), <논리와 사고>와<한국사입문> 중 1과목(3학점) 택일 총 9학점으로 한다.

### 제 3 장 전공과정

**제5조 (전공과목 이수)** ① 국제법무학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은‘<별표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① 국제법무학전공의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국제법무학전공의 전공 필수과목은 다음의 <표1>의 16개 교과목 가운데 12개 교과목으로 한다.

**<표1> 전공필수과목 : 16개 과목**

헌법 I, 헌법 II,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형법총론, 형법각론, 상법 I, 상법 II, 행정법 I, 행정법 II, 민사소송법 I, 형사소송법, 국제법 I, 노동법 I

- ③ 국제법무학전공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전공선택과목은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으로 한다.
- ⑤ 전공선택과목은 다음의 <표2>과 같이 정한다.

**<표2> 국제법무전공의 전공선택과목 : 33개 과목**

법제사, 법사회학, 헌법재판론, 담보물권법, 친족상속법, 부동산법무, 민사소송법 II, 형사소송법, 행정법III, 행정법IV, \*상법III, 상법IV, 상법V, 노동법II, 노동법연습, 경제법, 조세법, 지적소유권법, 환경법, \*국제법II, 국제법연습, \*국제경제법, \*국제통상법,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IT법무, 계약실무영어, \*영미법무, 로펌실무 I, 로펌실무 II, 로펌실무III, 로펌실무IV, 로펌실무V

⑥ 본조에 있어서 상법 I 은 상법총론을, 상법 II 는 회사법을, 상법III는 유가증권법을, 상법IV는 보험법을, 상법 V 는 해상법을, 행정법 I 은 행정법총론을, 행정법 II 는 행정구제법을, 행정법III는 행정조직법을, 행정법 IV는 행정법각론을, 노동법 I 은 노동법총론을, 노동법 II 는 노동법각론을, 로펌실무 I 은 민사변호사실무를, 로펌실무 II 는 형사변호사실무를, 로펌실무III은 조세·노동 및 행정사건변호사실무를, 로펌실무 IV는 가사사건변호사실무를, 로펌실무 V는 등기·경매 등 신청관련 변호사실무를 말하며, “연습”이라 함은 법률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이론을 연마하는 특별교과목을 의미하고, “특강”이라 함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자격고시 1차 객관식 시험 및 2차 주관식 시험의 준비를 위한 특별교과목을 말한다.

**제6조 (대학원 과목 이수)** ① 3학년 2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학생은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생의 이수가 허용된 대학원 교과목을 최대 6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② 대학원 교과목의 취득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대학원 진학 후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4장 졸업이수의 요건

**제7조 (졸업학점 이수체계)** ① 국제법무학 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최소 이수학점은 교양과목(35학점 이상),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51학점 이상)을 합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130학점 이외에 『법과대학 졸업능력 인증에 관한 내규』 및 『법과대학 졸업시험 시행내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 (전공이수학점)** ① 단일전공과정 : 국제법무학을 전공하는 자는 전공필수과목 36학점과 전공선택과목 15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전공선택과목은 \*로 표시된 7개 교과목 중 5개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과정 : 국제법무학을 다전공으로 이수하고자하는 자는 전공교양과목 9학점, 전공필수과목 36학점과 \*로 표시된 전공선택과목 중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과정 : 국제법무학을 부전공하고자하는 자는 전공교양과목 9학점, 전공필수과목 21학점과 \*로 표시된 전공선택과목 중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법무학전공자로 졸업할 수 있다.

**제9조 (다전공자의 특칙)** ① 타 학부(과) 학생으로서 국제법무학 다전공 이수를 신청한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다전공을 인정한다.

② 국제법무학을 다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경희대학교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전공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공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 법학전공과 국제법무학전공 사이의 부전공 및 다전공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⑥ 타 학부(과) 학생이 국제법무학 다전공 이수를 신청한 경우 타 전공 개설과목 중 법과대학 개설 전공과목과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은 9학점 이내에서 졸업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법과대학 전공과목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인정받은 학점만큼 법과대학 개설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총 졸업 학점에는 차이가 없다.

⑨ 본 내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전과생 및 편입생의 특칙)** ① 전과생 및 편입생(학사편입생 포함)은 전적학과(또는 전적전공) 및 전적대학(또는 졸업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와 법과대학이 인정하는 학점과 편입 또는 전과 이후 법과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하여

총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일반편입생의 경우 전공교양과목 9학점, 전공필수와목 36학점과 전공선택과목 27학점을 포함하여 7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되 전공선택과목은 \*로 표시된 7개 교과목 중 5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교 학점인정심사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학사편입자의 경우 다전공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 (특수과목의 이수인정)** ① 해외연수 학점, 취업스쿨 관련 학점, 사회봉사 학점, 교직원관련 학점,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전공 및 교양 학점으로 인정된다.

## 제5장 교과운영의 기본지침

**제12조 (삼단계의 반복학습)** ① 법과대학 4년간의 교과과정은 1, 2년차의 기초단계, 3년차의 심화단계 및 4년차의 실전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 ② 법과대학장은 전공과목담당전임교원과 협의하여 각 전공에 있어서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년별 권장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학강좌의 수강생은 전항에 지정된 학년별 권장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여 국가시험을 준비함과 아울러 법률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분반운영)** ① 강좌는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수의 수강생을 단위로 분반하여 운영한다.

- ② 분반의 경우 과목담당 교수는 전공의 기본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전공과목의 개설)** ① 법과대학장은 전임교수의 의견을 들어서 법학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전공과목을 지정하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법률전문가의 자격시험의 과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법과대학장은 전공과목의 지정과 변경에 있어서 학년도별 최소 1회 이상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의 만족도, 국가시험과의 효율적 연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과과정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제15조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의 강좌개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계

## 18 법과대학 교육과정 운영내규

---

열교양과 전공필수과목의 강좌는 관련과목의 연계성, 수강생의 편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학기과 2학기과 구분하여 개설한다.

② 전공선택과목은 학생들의 수요 및 과목의 중요성, 전공필수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1학기 또는 2학기과를 지정하여 개설한다. 단,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선택과목은 격년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③ 학년 및 학기별 개설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 (학년별 권장과목 및 이수순서의 예시)** ① 전공의 학년별 이수과목의 순서는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이수학점의 제한, 복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학년의 권장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I, II 등의 순서로 표시된 과목은 그 순서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수학점의 제한, 복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수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 (법학부 폐지에 따른 교육과정 단계별 폐지)** ① 교육과정 단계별 폐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와 같이 1학년 과목은 2013학년도부터 폐지, 2학년 과목은 2014학년도부터 폐지, 3학년 과목은 2016학년도부터 폐지, 4학년 과목은 2018학년도부터 폐지한다.

② 타 단과대학의 법학 과목을 이수할 경우 <별표 3>과 같이 국제법무학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별표 3>에서 지정하지 않은 과목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실시】** 본 내규의 적용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2008년 2월 29일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신규교과목】** [별표 2]의 구교과목은 신교과목과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한다.

**제4조 【실시】** 제17조 제1항 ~ 3항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의 적용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